



[www.sen.go.kr](http://www.sen.go.kr)

『인권·자율·책임 중시의 학생 생활지도를 위한  
2009학년도 학교생활규정 검토 결과 보고』

2009. 12.

서울특별시교육청  
(중등교육정책과)

『인권·자율·책임 중시의 학생생활지도를 위한』  
2009학년도 학교생활규정 검토 결과

중등교육정책과

### I. 추진 배경

- 학교생활규정은 사회 변화에 따라 사회적·교육적 합의 도출이 필요한 쟁점 사항들을 포함해야 하므로 지속적인 관심과 시의 적절한 개정이 필요함
- 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규정, 규정의 자의적 해석 및 관행적 지도 등으로 인한 학교공동체 구성원간의 갈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 학교공동체 구성원의 민주적 절차와 합의를 통한 학교생활규정의 제·개정을 통해 인격 존중의 생활지도 및 자발적인 실천 풍토를 조성할 필요가 있음

### II. 목적

- 각급 학교의 생활규정을 검토·분석, 환류(feedback)하여 관련 법령과 교육적 취지에 부합되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 정비하도록 지원
- 학생·학부모·교사 등 학교공동체 구성원의 민주적 합의에 의해 학교 규정을 제·개정하고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준수하는 풍토를 조성함
- 인격을 존중하는 민주적 생활지도와 학교규정의 자율적 준수를 통해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교권이 조화를 이루는 학교교육 풍토를 조성함

### III. 중점 검토사항

- 학교생활규정 체제의 적합성(법령 체제와 부합) 여, 부
- 학교생활규정의 내용, 운영 절차 등이 관련법령(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등)과 교육적 목적에 맞게 개정되었는지 여, 부
- 상·벌점 규정의 적절성 및 상·벌점 제도 운영의 적정성 여, 부
- 규정이 학생, 교원 및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으로 개정되었는지 여, 부
- 두발, 용의복장 규정이 학생, 교원 및 학부모 등 학교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으로 개정되었는지 여, 부
- 2008학년도 학교생활규정 검토 의견 적용 여, 부

## IV. 추진 계획

1. 대상 : 고등학교 311교 학교생활규정

2. 내용

구분	내용	비고
□ 2008년 권고사항 반영 여부	<input type="radio"/> 2008년 검토·분석 결과 학교 권고사항 반영 여, 부	
□ 체제의 적합성	<input type="radio"/> 법령 체제와 부합 여, 부 <input type="radio"/> 제·개정 절차 명시 여, 부	
□ 제·개정 과정	<input type="radio"/> 학교공동체의 의견 수렴 여, 부 <input type="radio"/> 학교 규정 홈페이지 탑재 여부	
□ 학생 선도(징계), 체벌 규정	<input type="radio"/> 근거법/징계 종류 등 적합성 <input type="radio"/> 학교폭력 사안 혼재 여, 부 <input type="radio"/> 일반 비행학생 징계 시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진술기회 부여 <input type="radio"/> 퇴학처분 시행 전 가정학습 실시 여, 부 <input type="radio"/> 정계재심 청구권 부여(학생징계조정위원회 재심 청구 절차 안내 포함) <input type="radio"/> 체벌 규정 여, 부 - 체벌 사유 규정 및 체벌 실시 사전, 사후 보고 - 체벌 도구, 횟수, 부위 지정 여, 부 등 <input type="radio"/> 봉사활동 단위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규정	<input type="radio"/> 근거법/가해학생 조치 및 피해학생 보호 여, 부 <input type="radio"/>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조항 여, 부 <input type="radio"/> 학교폭력 가해학생 징계시 학생 및 학부모에게 진술기회 부여 <input type="radio"/> 재심 청구권 및 청구기간 여, 부 <input type="radio"/> 분쟁조정 기능 조항 여, 부	
□ 용의복장 규정	<input type="radio"/> 교복의 착용(자율화) 여, 부 <input type="radio"/> 여학생 교복의 치마/바지 허용 여, 부 <input type="radio"/> 겨울 외투 착용 여, 부 <input type="radio"/> 두발 제한 형태	
□ 상·벌점제 규정	<input type="radio"/> 상점제, 벌점제, 상벌점제 혼용 여, 부 <input type="radio"/> 누적 벌점에 따른 징계 조치 현황 <input type="radio"/> 누적 벌점에 따른 징계 시 선도위원회 개최 여, 부	

## 3. 검토 결과 활용

- 가. 관련 법령에 맞지 않는 학교생활규정 제·개정의 자료로 활용
- 나. 학생의 인권이 존중되고 시대 상황에 적합한 학교생활규정으로 개정 유도
- 다. 학교생활규정 및 관련 우수사례 발굴·보급을 통한 일반화

## V. 세부 검토 결과

### 1. 학교생활규정 제·개정 과정

- 가. 2008년 권고사항 반영 : 고등학교 311개교 중 166개교(53.4%)가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함

나. 제·개정 절차

- 1) 고등학교 311개교 중 282개교(90.7%)가 학교규정에 제·개정 절차를 명시함
- 2) 학교생활규정 제·개정 절차 예시

학생, 학부모, 교사 설문조사 - 학급회 및 대의원회 협의(초안 작성) - 학교공동체 공청회(토론회) 개최 - 교무회의, 협의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 학교장 최종 확정

다. 학교공동체 의견 수렴

학교공동체 구성원 중 의견을 반영한 정도가 교원>학부모>학생 순으로 나타남

2008년 권고사항 반영	제·개정 절차 명시	학교공동체 의견 수렴		
		교원	학부모	학생
166 (53.4%)	282 (90.7%)	262 (84.2%)	213 (64.6%)	211 (67.8%)

### 2. 학생 생활 선도(징계) 및 체벌 규정

가. 학생 선도(징계) 규정

- 1) 관련 법령에 따른 징계 종류 등 오류
- 관련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징계 종류를 명시하고 있는 경우가 일부 있음(징계의 종류에 훈계 등 포함)

\* 초중등교육법 제18조(학생의 징계)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 1. 학교내의 봉사 2. 사회 봉사 3. 특별교육 이수 4. 퇴학처분(고등학교만 해당) ...'

- 선도위원회 개최 시 소선도위원회와 선도위원회 운영 구분의 기준이 미흡함

- 징계절차를 규정하는 학생선도규정에 학생 포상관련 규정이 일부 포함되어 있음
- 2) 의견 진술 기회 부여
  - 선도위원회 개최에 의한 징계 시 292개교(93.9%)에서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있으나 일부 학교에서는 진술 규정 항목이 없음
  - 징계 시 학부모에게 '징계사유 통지'→'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진술 기회 부여'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 3) 퇴학 처분 시행 전 일정기간 가정학습 실시 : 292개교(93.9%)가 명시하고 있음
  -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5항에 의한 가정학습은 무단결석으로 처리(학업성적관리지침, 서울특별시교육청, 2007. 개정판 참고)
- 4) 징계 결과 재심 요청
  - 대다수의 학교에서는 학부모 또는 학생에게 재심청구권 및 절차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으나 일부 학교에서는 명시하지 않고 있음.
  - 재심청구는 징계에 관한 구제의 목적이므로 학부모 또는 학생이 요청할 수 있음
- 5)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 청구 절차와 방법 명시
  - 150개 학교(48.2%)에서는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 청구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으나 과반수의 학교에서는 재심청구 절차를 명시하지 않고 있음.
  - \* 초중등교육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하여 퇴학 조치를 한 경우에는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 청구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하도록 함
- 6) 선도 규정에 학교폭력 사안 혼재
  - 학교폭력 사안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하여야 함에도 일부학교(63교, 20%)에서는 학교폭력 사안을 선도규정으로 심의하는 것으로 언급하고 있음

선도(징계) 규정						
관련 법령/징계 종류 등 종류 등 오류	징계시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진술 기회 부여	퇴학처분 시행전 일정기간 가정학습 실시	학생징계 조정위원회 제31조 제5항 재심청구 절차명시	징계 재심 청구권		학교폭력 사안 혼재
				학교장	학생/학부모	
17 (6.5%)	292 (93.9%)	292 (93.9%)	150 (48.2%)	280 (90%)	260 (83.6%)	63 (20.3%)

#### 나. 상·별점제 규정

- 1) 체벌 대체 프로그램으로 149개교(47.9%)가 상·별점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푸른교실 등 대안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31교, 9%)도 있음

- 2) 상·별점제를 실시하는 대부분의 학교에서 상점제와 별점제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음
- 3) 상별점제 운영학교 149개교 중 87개교(58.4%)에서 별점 상쇄장치를 운영하고 있으며, 확대 운영이 바람직함
- 4) 상별점제 운영학교 149개교 중 별점에 의한 징계 조치 시 선도위원회 개최를 통해 심의하는 학교는 87개교(58.4%)이며, 학생 선도규정에 상·별점제 관련 징계 조치 사항을 포함하는 학교는 92개교(61.7%)임
  - 별점이 누적되어 징계 조치를 할 경우, 선도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하는 것이 바람직함

체벌대체 프로그램 (311개교 중)			상·별점제 규정 (상별점제 운영학교 149개교 중)				
상·별점제	대안교실 (예 : 푸른교실 등)	기타	상·별점제 혼용 여부			징계조치 시 선도위원회 개최(여.부)	선도(징계) 규정에 상·별점제 조치사항 포함 여부(여.부)
149 (47.9%)	27 (8.7%)	4 (1.3%)	별점제만 실시	상·별점제 혼용	별점 상쇄장치 운영	87 (58.4%)	87 (58.4%)

#### 다. 체벌 규정

- 1) 고등학교 311개교 중 147개교(47.3%)가 체벌규정을 운영하고 있음. 현행 법령에 서 원칙적으로 체벌을 금지하고 있고, 우리교육청에서도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는 생활지도를 지향하고 있으므로 체벌규정도 점차 폐지되어야 할 것임
- 2) 체벌 관련 규정에 대부분의 학교가 체벌 도구, 횟수, 부위 등을 지정하고 있음
- 3) 147개교 중 116개교(78.9%)에서만 체벌 실시 전후에 허가를 받거나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규정 보유 (311개교 중)	체벌 규정(규정보유 149개교 중)						
	체벌 사유 명기	체벌 실시		체벌 도구, 횟수, 부위 지정			
		사전 허가	사후 보고	매	부위	횟수	장소
147 (47.3%)	137 (92.1%)	86 (57.7%)	30 (20.1%)	132 (88.6%)	131 (87.9%)	130 (87.2%)	96 (64.4%)

### 3.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규정

- 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규정 제 개정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령' 명시
- 1) 고등학교 311개교 중 236개교(75.9%)만 근거 법령을 명시하고 있음
  - 2)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 인원을 구체적으로 기재할 필요가 있음(법조인 참여 권장, 교장 제외, 교감 포함)
- 나. 개정법률 반영 여부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규정은 전부 개정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08. 3. 14 개정)' 및 '동법 시행령(2008. 9. 15 시행)'의 내용을 반영하여 모든 학교가 개정해야 하는데, 226개교(72.0%)가 개정된 상태임.
- 또한 2009.5.8, 일부 개정되어 2009.8.9부터 시행된 법률 내용을 추가로 반영하여야 할 것임
- 다. 가해학생 조치 및 피해학생 보호 : 286개교(91%)의 규정에 명시되어 있음
- 라. 학교폭력예방교육 실시 : 매년 실시하는 학교폭력예방교육에 대하여 274개교(88.1%)가 규정에 언급하고 있음
- 마. 의견 진술 기회 부여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에 의한 정계 시 274개교(88.1%)에서 가해 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있음. 법령에 따라 진술기회를 명시할 필요가 있음
- 바. 재심 청구권
-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2에 언급된 퇴학조치된 학생은 사도교육청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음을 명시한 학교는 274개교(88.1%)임
  - 법령에 언급된 바는 없으나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구제 차원에서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재심 청구권을 부여한 학교는 245개교(78.8%)임
  - 학교장에게 재심권을 부여한 학교는 146개교(46.9%)임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7조의 5항에 의해 자치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장은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하므로, 학교장에게 재심청구권을 부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사. 분쟁조정 기능 : 278개교(89%)가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학교는 명시하지 않음

근거법 명시	개정법률 반영 여부	가해학생 조치 및 피해학생 보호명시	학교폭력 예방교육 실시 조항명시	가해학생 및 학부모 진술기회 부여	시도별 학 생징계조 정위원회 제3항 청구 권 여부	정계 재심 청구권		분쟁조정 기능 조항명시
						학교장	학생/학 부모	
236 (75.9%)	226 (72.0%)	286 (91%)	274 (88.1%)	274 (40.5%)	126 (46.9%)	146 (78.8%)	245 (89%)	278 (89%)

### 4. 용의복장 규정

#### 가. 교복 자율화

- 1)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을 반영하고 학교특성 및 실정을 고려하여 제·개정하도록 함
- 2) 사회적, 시대적 흐름에 맞는 융통성·공정성 확보하도록 함
- 3) 학생의 인격을 고려한 교육적인 차원의 지도방법으로 적용·운영함
- 4) 남녀공학 또는 여자고등학교 232개교 중 33개교(14.2%)는 치마만 착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치마와 바지를 혼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5) 겨울 외투 착용은 대부분의 학교에서 자유롭게 운영하고 있으며, 2개교는 겨울 외투를 교복규정에 단순하게 언급하고 있음

교복 착용 (311개교 중)	여학생교복(232개교 중)			교복에 겨울 외투 포함 (311개교 중)
	치마만 허용	바지만 허용	치마/바지 혼용	
303 (97.5%)	33 (14.2%)	1 (0.4)	191 (82.3%)	2 (0.8%)

#### 나. 두발 길이 제한 현황

- 1) 남고와 공학을 포함한 228개교 중, 남학생 두발규정을 센티미터로 제한한 학교가 50개교(21.9%), 막연하게 제한한 학교가 157개교(68.9%), 제한을 두지 않은 학교가 21개교(9.2%)로 나타남.
- 2) 여고와 공학을 포함한 224개교 중, 여학생 두발규정을 센티미터로 제한한 학교가 72개교(32.1%), 막연하게 제한한 학교가 77개교(34.4%), 제한을 두지 않은 학교가 75개교(33.5%)로 나타남.
- 3) 두발 관련 규정은 학교 공동체 구성원의 민주적인 합의에 기초하여 제·개정하여야 하고, 제·개정된 규정을 학생들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할 것임

남학생 두발규정(228개교)		여학생 두발규정(224개교)		
cm로 제한	막연한 제한	제한 없음	cm로 제한	막연한 제한
50(22%)	157(68.9%)	21(9.2%)	72(32.1%)	77(34.4%)
			75(33.5%)	

### 5. 제 규정 학교홈페이지에 탑재 여부

- 가. 제 규정을 학교홈페이지에 탑재한 학교가 243개교(78.1%)이며, 이중 읽기를 제한한 학교도 46개교(18.9%)나 되고 있어 앞으로 제 규정을 학교홈페이지에 탑재하고 읽기 제한을 해제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임

나. 홈페이지에 탑재된 세부규정 현황은 다음의 표와 같으며, 학칙을 비롯한 학생과 관련한 제 규정을 탑재하여 홍보하여야 할 것임

제규정 학교홈페이지 탑재 및 권한		홈페이지에 탑재된 세부규정				
탑재	권한 제한	학칙	선도규정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규정	용의복장규정	체벌규정 (149개교)
243 (78.1%)	46 (18.9%)	106 (34.1%)	149 (48%)	120 (38.6%)	159 (51.1%)	74 (49.7%)

## 6. 「학교내의 봉사」의 시행 단위

- 가. 학생징계 중 「학교내의 봉사」조치를 날짜 단위로 정한 학교가 268개교(86.2%)이고, 날짜와 시간 단위를 병행한 학교가 29개교(9.3%)이며, 시간 단위로 정한 학교는 10개교(3.2%)임
- 나. 「학교내의 봉사」조치 시 날짜 단위보다는 시간 단위로 부여하여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육적 효과를 제고하는 방법으로 전환을 모색하여야 할 것임

봉사활동 시간 또는 날짜 부여 방법		
날짜	날짜와 시간 병행	시간
268 (86.2%)	29 (9.3%)	10 (3.2%)

## VI. 학교생활규정 개정 방향

### 1. 공통 개정 권고 사항

#### 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규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08. 3. 14 개정)」 및 「동법 시행령(2008. 9. 15 시행)」의 주요 개정 사항을 반드시 반영해야 함

- 1) 학교폭력의 정의에 '성폭력' 등 추가
- 2)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 변경

3) 단위 학교내 전담부서의 구성(상담교사, 보건교사, 책임교사) 등에 필요한 사항

4) 학교폭력예방교육 강화에 관한 사항

5)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변경 사항

6) 비밀누설금지 등에 따른 비밀의 구체적인 범위 등

추가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09. 5. 8 개정)」 및 「동법 시행령(2009. 8. 9 시행)」의 주요 개정 사항도 반드시 반영해야 함

### 나. 퇴학조치시 징계 재심 청구 규정

퇴학 조치를 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 청구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하여 안내하도록 「학생선도규정」 및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규정」에 명시할 필요가 있음(공문 중등교육정책과-16377, 2008. 7. 18 참고)

※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2(재심청구) ① 제18조제1항에 따른 징계처분 중 퇴학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18조의3에 따른 사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그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의2(퇴학 조치된 자의 재심청구 등) ①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법 제18조의3에 따른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2. 피청구인
3. 퇴학조치가 있음을 안 날
4. 청구의 취지 및 이유

### 2. 학교생활규정 제·개정 과정

가. 학교생활규정 제·개정 시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이를 학교생활규정에 명시할 필요가 있음

나. 학교생활규정 제·개정 절차와 개정 일자를 명시(특히 두발 관련 규정, 체벌 규정 등) 할 필요가 있음

다. 관련 법령 개정 등으로 개정 사유가 발생하면 학교생활규정을 즉시 개정하도록 함

라. 관련 법규

### 1) 교육기본법 제5조(학교의 자율성 등)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존중되며, 교직원·학생·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교 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

### 2) 교육기본법 제9조 (학교교육)

④ 학교의 종류와 학교의 설립·경영 등 학교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3) 교육기본법 제12조 (학습자)

①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 ② 교육내용·교육방법·교재 및 교육시설은 학습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하여 학습자의 능력이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 한다. ③ 학생은 학습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학교의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교원의 교육·연구활동을 방해하거나 학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4) 유엔 아동권리에 관한 협약 제12조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견해를 자유스럽게 표시할 권리를 보장하며…'

## 3.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규정

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규정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08. 3. 14 개정)'및'동법 시행령(2008. 9. 15 시행)'을 참고하여 학교 특성에 맞게 반드시 제·개정하고, 위원 구성은 학교 내, 외 구성 비율을 적절하게 조정하도록 함(가능하면 경찰, 변호사 등을 위원으로 위촉하고, 기존의 위원 중 교장은 제외하며, 교감을 새롭게 포함하도록 함. 위원장은 호선)

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09. 5. 8 개정)' 및 '동법 시행령(2009. 8. 9 시행)'의 주요 개정 사항도 반영하여 추가 개정해야 함

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재심청구 규정을 반영하도록 함(학생징계조정위원회 재심 청구 절차 및 방법 안내 포함)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과 동법시행령 및 해설」(중등교육과-24994, 2004. 8. 23)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재심 요청이 있을 경우 자치위원회는 이를 수용하여 재심을 하는 것이 바람직함.'

\* 「학교폭력예방 가이드북」(법무부, 교육인적자원부, 2008)

'가해학생 보호자가 타당한 이유를 들어 재심의를 요구하는 경우라면 자치위원회는 당해

사항에 대해 재심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함.'

### 라. 관련 법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08. 3. 14 개정)' 및 '동법 시행령(2008. 9. 15 시행)'.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09. 5. 8 개정)' 및 '동법 시행령(2009. 8. 9 시행)'

## 4. 학생 선도(징계) 규정 및 체벌 규정

### 가.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도록 학생 징계의 절차·종류 등을 명시하도록 함

○ 훈계는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의 징계 종류가 아니므로 학생선도규정에 징계의 종류로 명시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

나. 선도규정은 학생 징계와 관련된 내용이므로 선도규정과 포상규정은 별도로 구분하여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다. 징계 시 의견 진술 기회 :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적용 절차를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라. 징계결과 재심 요청 :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재심청구권을 부여하고 적용 절차 명시. 퇴학조치된 학생에게 「서울특별시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는 절차와 방법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음

마. 퇴학 조치 전 가정학습 실시 : 퇴학 조치 전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5항에 의거하여 '가정학습'을 부여하고, 퇴학 전 또는 퇴학 조치 결정 시 대안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주선하는 것이 바람직함(이때, 가정학습 기간은 무단결석으로 처리)

바. 학생 체벌은 현행 법령에 원칙적으로 체벌을 금지하고 있고, 서울시교육청에서도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는 생활지도를 지향하고 있으므로 체벌규정은 점차 폐지하여야 할 것임.

다만, 학교에 따라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에 대한 자의적 해석을 금지하고, 관행적 체벌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학생 체벌규정을 둘 경우 학교공동체 구성원의 민주적 합의에 기초하여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언급하여야 할 것임

현행 법령 및 판례에서 체벌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위반 교사에 대해서는 사법 처리가 되고 있는 실정임.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의 체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체벌을 허용한 것으로 오해하면 안 되며,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임의 또는 확대 해석해서도 안 됨.

### 사. 상벌점제 규정

1) 상벌점을 서로 상쇄하여 교육적 선도 효과를 증대시킬 필요가 있으므로 상점제와 벌점제

를 병행하여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 2) 누적 벌점에 의해 징계 양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징계 시 선도위원회에서 반드시 심의 절차를 거치도록 학생선도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 아. 관련 법규

- 1) 초·중등교육법 제18조(학생의 징계),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 1. 학교 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 이수 4. 퇴학처분(고등학교만 해당) …’
- 2) 초·중등교육법 제18조(학생의 징계) ‘① 학교의 장은 … 학생을 징계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하고자 하는 경우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 3)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⑤ 학교의 장은 퇴학처분을 하기 전에 일정기간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⑦ …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행하여져야 한다.’

#### 5. 용의복장 규정

- 가. 여학생의 경우 치마/바지를 혼용하여 착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야 함  
나. 학생의 명찰 폐용은 착탈식으로 전환하여야 할 것임(국가인권위원회 권고)  
다. 두발관련규정을 제·개정할 시 학교공동체 구성원의 민주적 합의에 기초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임

#### 6. 학교생활규정 개정 시 유의 사항

- 가. 학교생활규정은 금지와 처벌 위주의 규정에서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는 「실천 중심 생활윤리」로 전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즉 ‘…금한다.’, ‘…하지 말아야 한다.’에서 ‘…를 할 수 있다.’, ‘…보장한다.’, ‘…실천한다.’ 등  
나. 학교생활규정은 학교공동체의 민주적 합의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관련법령에 부합되게 제·개정하고 학생 인권 존중의 토대 위에서 자율적으로 준수하는 풍토를 조성한다.  
다. 학교 홈페이지에 탑재하거나 학생수첩으로써 학생들이 학교생활규정을 학교생활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실천 규범으로 받아들이도록 하며, 또 하나의 학교 교육 과정(활동)으로 새롭게 정립될 수 있도록 한다.  
라. 학교생활규정 개정의 민주적 합의와 자율 준수 풍토 조성을 통하여 교사의 교권과 학생들의 인격이 존중되는 민주적 학생 생활지도의 토대를 구축한다.

## VI. 잊은 오류 사항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규정]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규정 근거법 제시 요망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생징계조정위원회 재심 청구 절차 명시 요망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시행령 개정령 적용 요망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규정 법령체계가 맞지 않음  
(예) ▶ 조, 항(①, ②, ③…), 호(1, 2, 3…)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규정 중 반드시 개정되어야 할 사항>

(정의) “학교폭력”이란 학교内外에서 학생간에 발생한, 상해, 폭행, 강금, 협박, 약취·유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및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구성) ①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교사위원은 교감을 포함하여 .....(교장 제외)

(전담상담교사 배치 및 전담기구 구성) 학교의 장은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교사를 말한다) 등으로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라 한다)를 구성한다. 전문상담교사는 전문상담부장, 책임교사는 생활지도부장이 겸임한다.

(교육) 1. 학기별로 1회 이상 ....

(가해학생 조치) 10일이내의 출석정지 및 이후 특별교육 이수

### <2009. 9. 8 시행 법률 관련 추가 개정할 내용>

- 가.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장애학생의 보호를 위한 조치  
나. 피해학생은 피해사실 확인을 위해 전담기구에 조사 요구할 수 있음  
다. 피해학생에 대한 보복 행위를 금지함  
라. 학교폭력 신고 및 상담을 위해 긴급전화를 설치 운영

### [선도규정]

- 생활규정 제·개정시 학교공동체(교사-학생-학부모) 의견 수렴 조항 삽입 요망

2. 선도규정 징계처분에 대한 학생 또는 학부모의 재심청구권 규정 필요
3.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생징계조정위원회 재심 청구 절차 명시 요망
4. 선도규정에서 포상부문 삭제, 징계내용 중 '훈계' 삭제 요망

#### [상·벌점제규정]

1. 상점제와 벌점제를 병행하여 규정해 실시하고, 상·벌점을 서로 상쇄하여 교육적 효과 증대 필요
2. 벌점제를 통한 징계 양정을 정하였다 하더라도 징계 시 선도위원회 절차를 통하여 징계하는 규정을 삽입하여 시행하여야 함

#### [학교별 체벌관련 규정]

- 현행 법령에 체벌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우리교육청에서도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는 생활지도를 지향하고 있으므로 체벌규정은 점차 폐지되어야 할 것임.
- 단위 학교별로 체벌 규정을 존속할 경우, 학교공동체 구성원의 민주적 합의에 기초하여 구체적으로 언급하여야 할 것임
  -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의 체벌에 대해서는 관련 법 및 판례 등을 참고로 학교생활규정에 상세하게 명기하여 준수토록 함(체벌 방법장소사후조치 등)

\* 대법원, 헌법재판소의 체벌 허용 기준

- 징계방법으로서의 체벌은 허용되지 않으나,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체벌 절차, 방법, 정도 등이 사회 통념을 벗어나지 않아야 함

- 관련 법령 또는 사회통념을 벗어난 체벌시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 및 민·형사상 등의 책임을 감내해야 함을 홍보